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이렇게
관리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System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발 간 사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대통령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차적인 관리기준은 공동관리규정이며, 개별부처는 그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한해 R&D관련 18개 부처·청과 협력하여 연구자분들이 보다 편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범부처 공통관리기준인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올 7월에 시행됩니다.

좋은 개선사항일지라도 연구자 분들과 연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정착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선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설명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 연구현장 의견수렴('11.4~7월) 및 관계부처 회의('11.7.15)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작업반* 구성·운영('11.8~11월)
 - ※ 17개 부처에서 추천한 55명의 전문가로 7개 중점과제별 작업반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11.12.22, 국과위)
 - ※ 개선방안(초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11.11~12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12.5.14)

목 차

I.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1
II. 과제수 제한(3책 5공) 제외과제 확대 및 참여율 제한 완화	7
III.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학생인건비 풀링제)	10
IV. 간접비 기준 정비	13
V. 기초연구에 대한 특례 마련	16
VI.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17
VII. 기술료 기준 범부처 표준화	19
VIII. 기 타	22

↪ 부 록 ↪

[부록 1]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7
[부록 2] 규정 개정 전문	28
[부록 3] 「R&D 도우미센터」 소개 및 이용방법	98

I.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개정 배경>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부처별로 세부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소수의 연구비 부정을 막고자 생기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세부기준들 중에 통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공동 관리규정으로 신설하고,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부처별 세부기준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연구개발비목의 간소화(4개 비목 → 2개 비목)	제12조·별표2
----------------------------	----------

【 개정 전 】

4개 비목, 7개 세목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②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③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④ 간접비	간접비



【 개정 후 】

2개 비목, 8개 세목	
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②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신설	제12조·제19조·별표2
-------------------	---------------

현행 연구활동비 중 국내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식대, 회의비 등을 분리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현재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을 면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표 2의2의 연구과제추진비의 부당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고, 증명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연구비 세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변경	별표2
-------------------------------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	실지금액 계상	급여총액(4대보험 및 퇴직급여 총당금/본인·기관부담금 포함)계상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정범위 확대	기간 명시 없음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
연구장비·재료비	장비구입 시점 변경	과제 종료 1개월 이전구입 완료	과제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완료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여비계상 기준의 구체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 실비 계상	①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르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계상 불가 ②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신설	-	시험·분석·검사,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신설

전문기관 승인사항 명확화	제12조의2
----------------------	--------

연구비는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 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② 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연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③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 ④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이상 늘리려는 경우
-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사용기준 구체화	제19조제8항 및 별표2의2
--------------------------	-----------------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부당집행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구 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FAQ :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관련>

Q1. 간접비와 직접비간 전용이 가능한가요? (관련조문: 제12조의2, 별표2의2)

A1. 간접비의 일부 금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로 인해 위탁 연구개발비가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반대의 경우로 직접비의 일부 금액을 간접비로 전용하여 간접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대상이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Q2.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연구장비 구입비로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관련조문: 제12조의2, 별표2의2)

A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당초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원래계획) 상의 직접비 사용 계획을 변경하여 원래계획에 없는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집행을 승인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Q3. 직접비 중 인건비를 변경(증, 감)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한가요?

(관련조문: 제12조의2, 별표2의2)

A3. 기존에는 인건비 증액(20% 이상)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승인 없이도 인건비 변경(증, 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하거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 집행이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되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Q4.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원들의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관련조문: 별표2)

A4.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Q5. 대학이 연구기관일 때, 연구개발과제 관련 여비는 대학 산학협력단 기준을 준수해도 되나요? (관련조문: 별표2)

A5.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여비는 해당 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되므로,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여비 기준이 아닌 해당 대학의 여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기관이 대학이 아니어도 계상이 가능한가요? (관련 조문: 별표2)

A6. 기존에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만 계상이 가능했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연구기관에서 계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의 집행 시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는 바, 연구기관의 '공용성' 기기·비품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Q7.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식대에 평일 점심식대는 왜 포함이 안 되나요?

(관련 조문: 별표2의2)

A7. 평일 점심식대는 일반적으로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은 부당집행 금액 회수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니 집행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인건비가 변경(증, 감)되면 이에 따라 연구수당도 변경(증, 감)되어야 하나요?

(관련 조문: 별표2의2)

A8. 인건비 변경에 따른 연구수당은 감액은 해야 하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즉 참여 연구원의 변경으로 인건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도 반드시 감액되어야 하나,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변경(증, 감)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집행 금액으로 회수 대상이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II. 과제수 제한(3책5공) 제외과제 확대 및 참여율 제한 완화

<개정 배경>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과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로 인해 연구비 규모가 작은 과제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등에 우수연구자가 참여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별 시작·종료 시점이 상이함에 따른 실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율 관리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연구비 규모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3책 5공 제외과제를 확대하였으며, 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연구비 참여율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며,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최대 3개 이내

<주요 개정 내용>

<p>3책5공 제외과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일정 금액 이하(국과위 고시)인 과제 →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에게만 적용 ■ 소액(국과위 고시)과제 	<p>제32조</p>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과제를 말하며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탁과제는 과제수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과제란 연구비 규모가 작은 단독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하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부과제나 협동과제 없이 단일한 과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12년 7월 국과위 홈페이지 및 R&D 도우미센터에 게재)

<p>연구과제 참여율 제한 기준완화 ■출연(연), 특정(연) 등의 참여율을 130%까지 계상하도록 확대</p>	<p>별표2</p>
--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출연(연) 등의 연구자 참여율을 최대 130%까지 계상(정부수탁 사업 및 기본사업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기준 인건비의 100%까지만 지급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소속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은 해당기관의 기준 인건비 총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준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계획·사용금액·사용 후 집행내역 등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율을 130%까지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수당 계상을 목적으로 한 참여율 계상은 할 수 없습니다.

<p>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정보의 정보관리 시스템 등록 의무화</p>	<p>제25조</p>
---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과제별 참여율 등을 전문기관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FAQ : 과제수 제한과제 확대 및 참여율 완화 관련>

Q1. 3책 5공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조문 제32조)

A1. 3책 5공제도에서의 3책은 '주관연구책임자(총괄과제, 세부과제 포함)'를, 5공은 '참여 연구원'을 의미하며 이 중 3책은 5공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연구자 1인은 최대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위탁과제는 동 제도 적용범위에서 제외).

3책 5공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1)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 개발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과제 5) 국과위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규모 과제입니다. 이 중 4)와 5)는 이번 개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Q2.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130%까지 지급되어도 되나요?

(관련조문: 별표 2)

A2.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1인당 최대 130%까지 참여율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기준 인건비의 100% 범위 내에서만 지급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 한도인 130%를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추가 계상할 수 없습니다.

Q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율 130% 계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관련조문: 별표 2, 부칙 제1조)

A3. 해당 조항은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시행일인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Ⅲ.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학생인건비 풀링제)

<개정 배경>

대학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의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범부처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의 정산을 면제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도명칭 변경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확대	제12조의3제1항
----------------------------	-----------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을 위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대학·특정연구기관만 가능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학연합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출연(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잔액 정산 및 반납 면제	제12조의3제3항, 제19조제4항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잔액의 정산 및 반납을 면제하여 과제공백기 등에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외의 직접비에서 연구과제비가 남은 경우 학생인건비로 전용하여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강화	제12조의3
----------------------------------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자격기준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선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 점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 2회 내에서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잔액 정산 및 반납면제 등의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마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은 3년이나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일정금액 이상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이 많은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경우 등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동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FAQ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관련>

Q1. 학생인건비 정산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관련조문: 제12조의3, 부칙 제1조)

A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은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해서 정산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 (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등 포함)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과제 종료 시 타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정산 및 반납 절차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정산이 면제되면, 반납 및 회수 절차도 적용되지 않나요? (관련조문: 제12조의3)

A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 2회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지정이 취소되게 되면 정산 면제 혜택은 즉시 중단되며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은 회수 대상이 됩니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지정 취소 요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침으로 2012년 하반기에 정해집니다.

IV. 간접비 기준 정비

<개정 배경>

간접비 계상기준을 매년 고시하여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현 사용용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간접비 개념 정의 및 산출주기 연장(1년→2년)	제12조제5항 및 7항
----------------------------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간접비 산출·계상 및 집행의 세부기준 마련 시 합리적 근거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접비 산출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간접비를 해마다 산출함에 따른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간접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변경	별표2
--------------------	-----

▶ 현행 “지원인력 인건비”와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를 “지원인력인건비”로 통합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 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 의무화 및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로 지급상한 설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기관의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소속 연구자·지원인력 등에 대해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집행 가능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연구 간접비 총액의 5% 범위에서 설립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다음 간접비 산정 및 고시는 2013년에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신청 기관에 한하여 2012년도 간접비율을 추가로 산출합니다.

<FAQ : 간접비 기준 정비 관련>

Q1. 간접비 계상기준에서 직접비 중 현물이 제외되는데, 이는 인건비에서의 현물도 제외됨을 의미하나요? (관련조문: 제12조, 별표 2)

A1.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인건비에서의 현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간접비 계상 시에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인건비 현물 포함)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계상하기 바랍니다.

Q2. 영리법인이 연구기관인 경우,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관련조문: 별표2)

A2. 영리법인의 경우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간접비 사용항목 제한이 없어서 규정에 명시된 모든 항목의 계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Q3.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를 통해 수급되는 간접비의 일정비율을 해당 연구 책임자에게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관련조문: 별표2)

A3.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연구기관의 장이 소속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에 따라 수급되는 간접비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Q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관련조문: 별표 2)

A4. 대표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경비,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항목이 신설되면서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 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비용'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해당 항목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V. 기초연구에 대한 특례 마련

<개정 배경>

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 응용, 개발, 상용화 등 상이한 연구특성의 과제를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독창성과 도전성이 중요한 기초연구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보고서 등의 행정부담 완화, 성실실패 도입 등 기초연구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별 연구비 사용잔액에 대해 미승인 이월사용 허용	제33조의2제1항
---	-----------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 없이 협약기간 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간소화 근거 마련	제33조의2제2항
--	-----------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출문서의 종류, 보고서 작성사항,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수행에 대한 불이익 조치 면제	제33조의2제3항
--------------------	-----------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수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었다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개발과제 신청·선정시 감점 부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VI.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개정 배경>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제재 기준이 상이하여 공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참여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환수 사유별 한도액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연구과제비 환수사유별 환수한도액에 대한 기준 마련		별표5
환 수 사 유		환 수 기 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참여제한 기준 정비	제27조
-------------------	------

실제 사유별 구분이 어려웠던 횡령·편취·유용·전용 등으로 구성된 현행 연구비 용도의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을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한 경우 : 3~5년 ■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2~3년 ■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의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 초과 : 5년 이내 ■ 용도의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30% : 4년 이내 ■ 용도의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3년 이내

동시에 수행중인 타 과제에서 연구비 용도의 사용 등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협약해약 가능	제11조
--	------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한 과제에서 연구비 용도의 사용 등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과제의 협약도 해약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FAQ : 연구부정에 관한 제재 기준 정비 관련>

Q1.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였지만, 해당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이미 해당 금액을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을 받지 않나요? (관련조문: 제27조, 별표5)

A1.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단, 적발 당시 해당 금액을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해 놓은 경우라면, 참여제한 기간이 1년 이상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 회복되어 있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한 금액 규모에 따라 규정에 명시된 기한과 같이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VII. 기술료 기준 범부처 표준화

<개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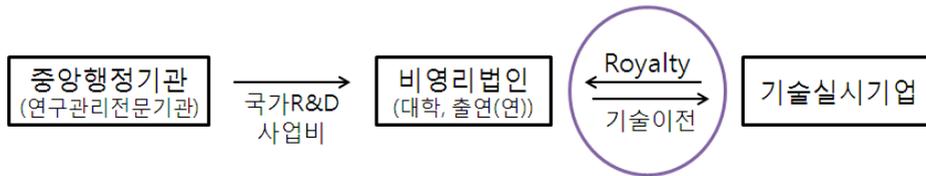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에는 기술료 징수근거와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용도만 규정하고 기술료 징수방법, 금액 기준 등은 부처별로 정하고 있어 관리기준 상이로 연구현장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이를 실시하려는 기관간의 계약조건을 규제하여 시장가치에 따른 연구성과 확산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계약자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납부기술료의 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부처 공통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명문화	제22조
--------------------------	------

아래 2가지 경우에 있어서 로열티(Royalty) 개념의 기술료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금액 등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1) 비영리법인과 기술실시기업 간 기술료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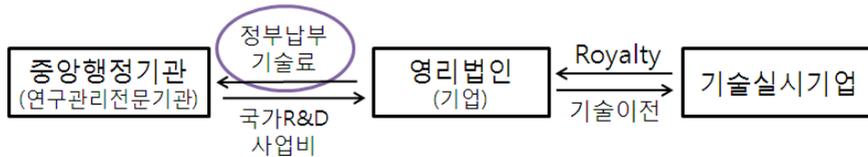
▶ 2)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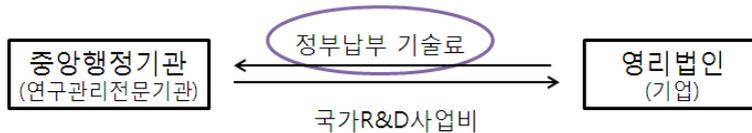
<p>정부납부기술료의 정액기술료 징수기준 표준화</p> <p>■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징수</p> <p>- 대기업(40%), 중견기업(30%), 중소기업(10%)</p>	<p>제22조, 제23조</p>
---	-------------------

영리법인이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인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정액으로 납부할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로 납부하도록 표준화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기술료 납부기준이 정부출연금의 15%~20%이나, 앞으로 정부출연금의 10%로 경감됩니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정상기술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 2) 영리법인의 자기실시



<p>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근거 마련</p>	<p>제23조제8항</p>
---	----------------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이전 한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활용하여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시기) 동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FAQ : 기술료 기준 범부처 표준화 관련>

Q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기술료 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관련조문: 제22조, 제23조)

- A1. 원칙적으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해당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른 기술료 기준(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대로 징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리법인이 다른 영리법인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였다면 해당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른 기술료 기준(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10%)대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및 직원의 보상금' 지급 범위 및 기준이 따로 있나요? (관련조문: 제23조)

- A2. 징수한 기술료는 규정에서 정하는 항목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등의 보상금과 관련한 지급 범위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들의 보상금으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포함)'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VIII. 기 타

<p>연구개발결과의 비공개기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과제 : 최대3년 ■ 주관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유보요청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경우 : 1년6개월 이내 ■ 참여기업이 영업비밀 등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경우 : 1년6개월 이내 	<p>제18조제4항</p>
---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비공개기간 연장이 가능

(적용시기) 동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공개 기간을 산정합니다.

<p>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강화</p>	<p>제24조·제24조의6</p>
---------------------------------	--------------------

- ▷ 보안관리 실태점검 후 개선조치 요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보고 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기관)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
- ▷ 보안과제의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보고
- ▷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통보

<p>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강화</p>	<p>제19조제10항</p>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 시설·장비를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특례	제33조의3
----------------------	--------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인정하여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3조의4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제도의 공통기준 마련 및 적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R&D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구성(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및 지침 제정 위임사항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선정·점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제12조의3)
- ▷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등을 방문하는 경우 보고 서식에 관한 사항(제24조)
-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의 등록·기탁 기관에 관한 사항(제25조제13항)
- ▷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기준(3책5공) 적용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제32조제2항)
-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별표2)

<FAQ : 시행시기 관련>

Q1. 부칙에서 말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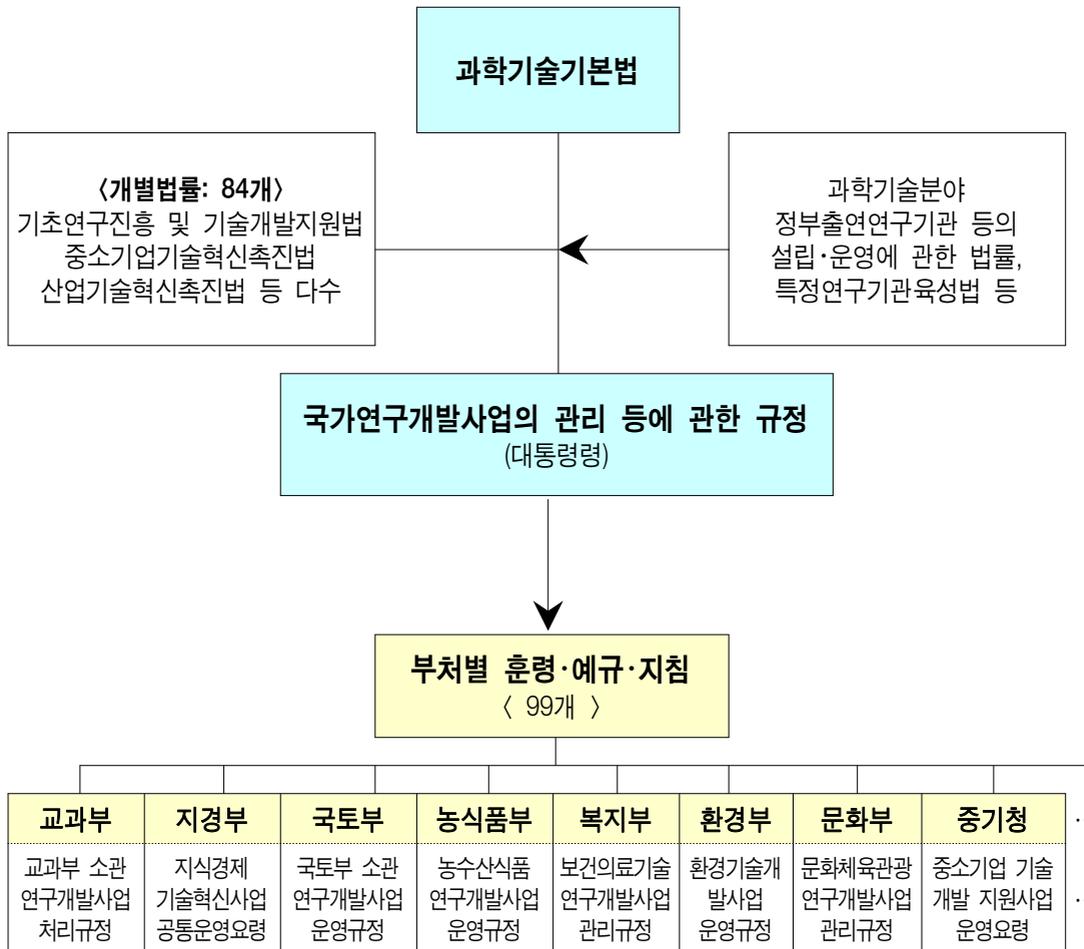
A1.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개정된 규정 시행 후 신규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 뿐 아니라, 계속과제와 같이 연도별로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제의 연차협약 과제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 록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법령체계	27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28
[부록 3] R&D도우미센터 소개 및 이용방법	98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법령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간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산업기술촉진법 등 84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 18개 부처별로 훈령·예규 등 총 99개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삭제 <2012.5.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⑥ 삭제 <2012.5.14>

⑦ 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 이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사업 중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5.14]

[시행일 : 2013.1.1] 제4조제1항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 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과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삭제 <2012.5.14>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3.28, 2012.5.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 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2012.5.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8, 2012.5.14>

-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⑥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⑧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⑨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⑬ 삭제 <2012.5.14>

⑭ 삭제 <2012.5.14>

⑮ 삭제 <2012.5.14>

⑩ 삭제 <2012.5.14>

⑪ 삭제 <2012.5.14>

⑫ 삭제 <2012.5.14>

[제목개정 2012.5.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학연합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본조신설 2012.5.14]

[시행일 : 2013.1.1] 제12조의3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14>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3.28>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⑨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⑪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5.14>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2.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3.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삭제 <2012.5.14>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3.28>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2.5.14>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현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 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 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결과물 중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14>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2.5.14>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3.28>
- ⑨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28>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 ⑪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

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 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⑥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 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 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 ⑦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 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 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2.5.14>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업·활용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3.2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2.5.14>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2.5.14>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 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연구보안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급비밀, II급비밀,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I급비밀, 군사 II급비밀, 군사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 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3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8(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28>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희·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5.14>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⑩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 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 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㉒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3.28>

㉓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㉔ 제13항에 따른 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㉕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28>

㉖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 제3호의 정보를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명이 되며, 간사위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28>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3.28, 2012.5.14>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1.3.28>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28>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3.28>
- 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8>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4>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6개월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6개월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3(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4]

제33조의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4]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 삭제 <2012.5.14>

2. 삭제 <2012.5.14>

부 칙 <제23788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고시하되, 2012년도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및 고시를 요청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고시한다.

제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참여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건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로 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2조의2 및 제19조”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2.5.14>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자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의3] <개정 2012.5.1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1의4 <개정 2012.5.1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 되는 비목 및 범위
<p>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나. 참여기업이 <u>중견기업인 경우</u>: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p> <p>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u>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u></p> <p><u>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u></p> <p>바. 참여기업이 <u>3개 이상</u>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p> <p>나. 참여기업이 <u>중견기업인 경우</u>: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p> <p>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p>	<p>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u>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u>)</p> <p>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u>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u>)</p>

※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2] <개정 2012.5.1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p>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액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제 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p>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학생 인건비</p>	<p>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p> <p>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연구장비·재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간 접 비	간 접 비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핵심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p> <p>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 상 기 준
		<p>계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2.5.14>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8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의3] <신설 2011.3.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 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 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 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 4 <개정 2012.5.1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 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2.5.14.>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9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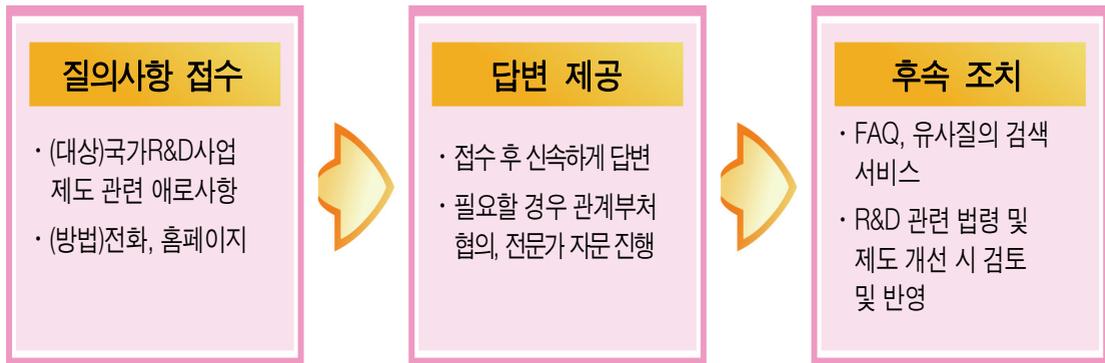
환 수 사 유		환 수 기 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부록 3 R&D도우미센터 소개 및 이용방법

1. R&D 도우미센터 소개

- R&D 도우미센터는 국가 R&D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령과 제도에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의 상시적인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2009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R&D 도우미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상담 및 의견수렴을 전화상담(02-724-8700)과 온라인상담(www.rndcall.go.kr)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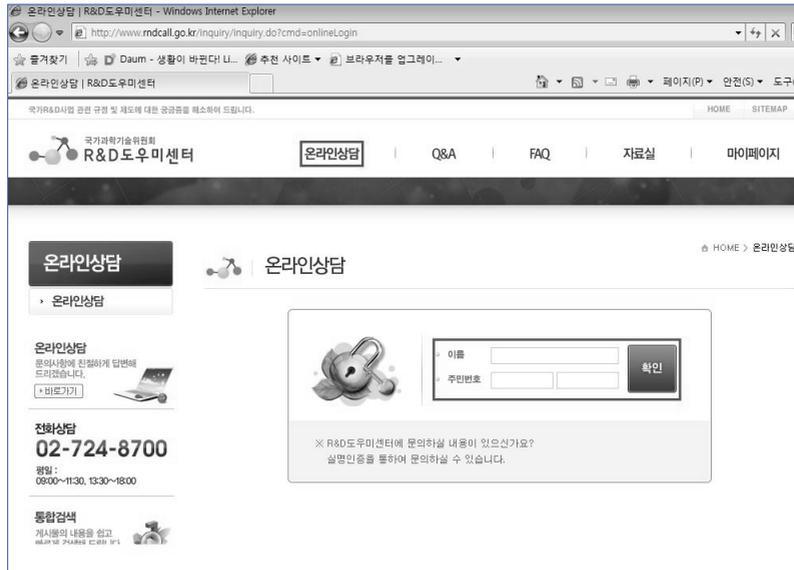
【접수·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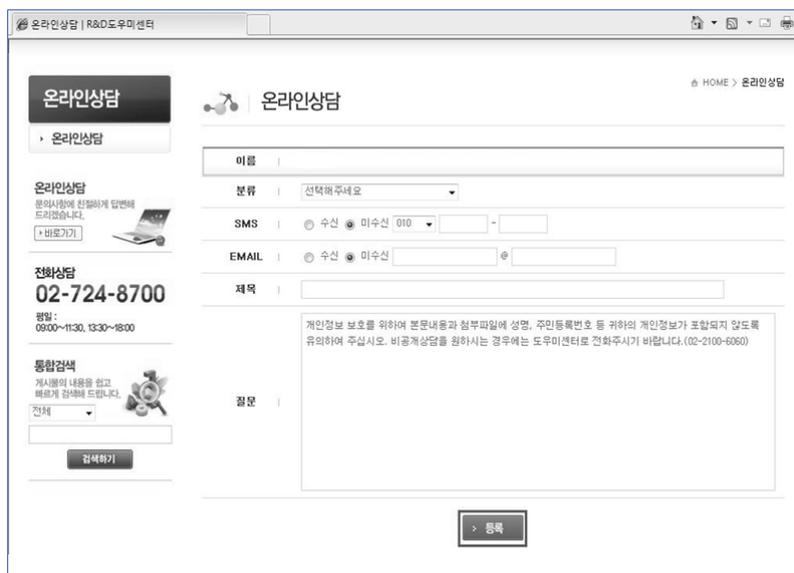
2. R&D 도우미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

● 질의등록

- 홈페이지 상단의 온라인상담 Click ⇨ 실명인증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 버튼 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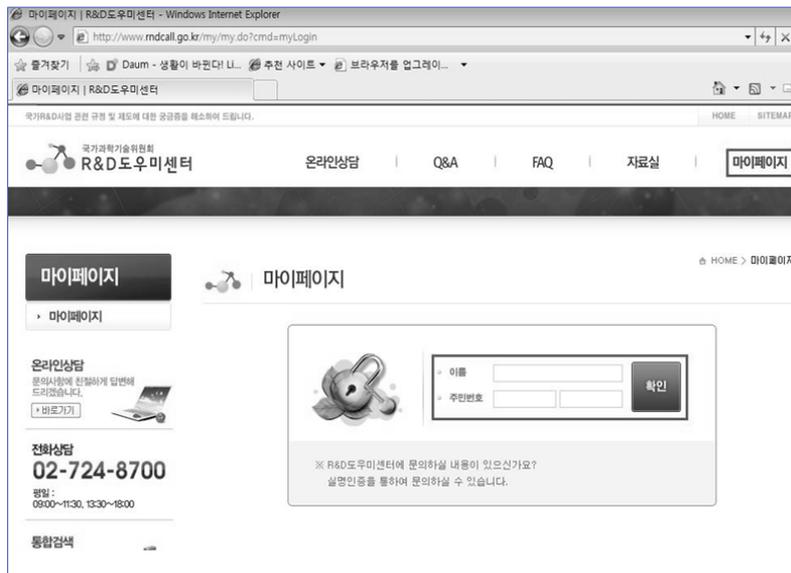
- 분류, SMS, 이메일, 제목, 질문 등을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Cl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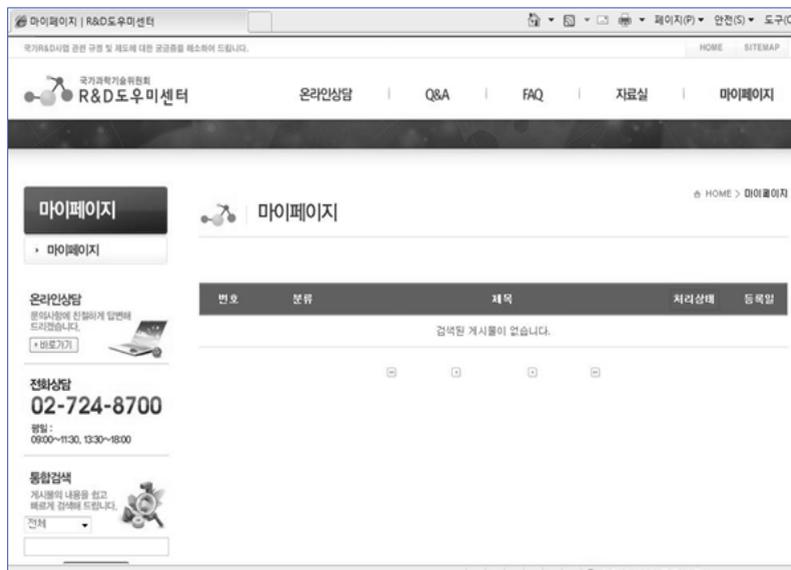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답변확인

- 홈페이지 상단의 My page Click ⇨ 실명인증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버튼 Click



- 처리상태 및 상담내용 확인 가능



3. NTIS 모바일 웹에서의 「R&D 도우미센터」 이용방법

● NTIS 모바일 웹 접속 방법

1. 휴대용 단말기에서 NTIS 모바일 서비스 주소(http://m.ntis.go.kr) 직접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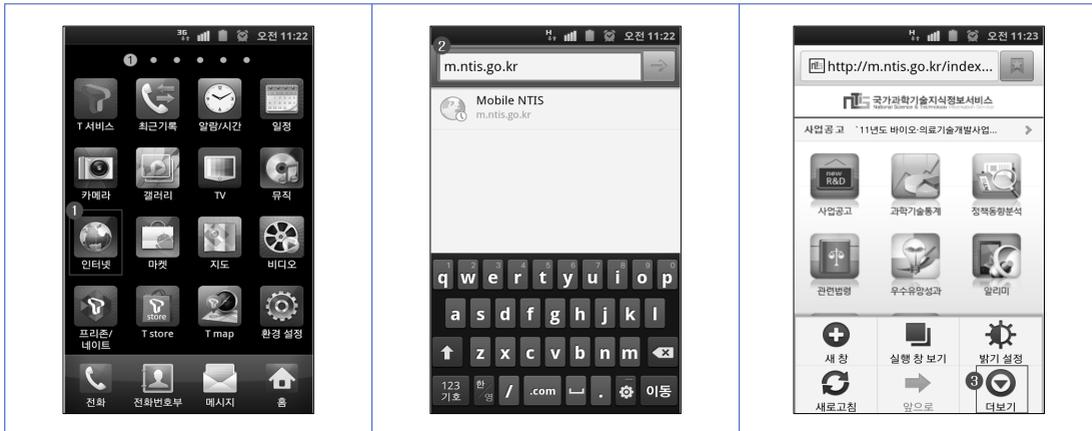
2. NTIS 통합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 서비스로 자동 연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NTIS 모바일 웹 바로가기 설정 방법

1. 안드로이드폰



1	인터넷 접속	2	주소 입력	3	네비게이션 바 선택
홈 화면의 '인터넷'을 터치하여 인터넷에 접속		입력창에 m.ntis.go.kr을 입력하고 모바일 NTIS를 선택 ※ 검색창 하단에 History가 없을 경우에는 자판의 [이동] 버튼을 터치		휴대용단말기 좌측 하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되는 사각형의 영역에서 [더보기]를 터치	



4	'단축메뉴 추가' 선택	5	바로가기 생성	6	생성 완료 확인
목록 중 '대기 화면에 단축메뉴 추가'를 선택		"바로가기(Mobile NTIS)가 생성되었습니다" 안내문구 확인		대기화면으로 이동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되었음을 확인	

2. 아이폰



1	인터넷 접속	2	주소 입력	3	네비게이션 바 선택
<p>홈 화면의 Safari를 터치하여 인터넷에 접속</p>		<p>입력창에 m.ntis.go.kr을 입력하고 모바일 NTIS를 선택 ※ 검색창 하단에 History가 없을 경우에는 자판의 [Go] 버튼을 터치</p>		<p>하단의 네이게이션 바에서 책갈피 아이콘을 터치</p>	



4	'홈 화면에 추가' 선택	5	홈에 추가	6	바로가기 설정 완료
<p>'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터치</p>		<p>홈 화면에 추가될 아이콘 명을 확인하고 상단의 [추가] 버튼을 터치</p>		<p>홈 화면에 모바일 NTIS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p>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NTIS 모바일 웹에서 R&D 도우미센터 이용



1	모바일 NTIS 메인화면	2	도우미센터 선택	3	도우미센터 메인 화면
메인화면에서 2 페이지 버튼을 터치		도우미센터 아이콘 선택			